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871

발의연월일: 2021. 10. 18.

발 의 자:전재수·강민정·고용진

김성환 · 김정호 · 박상혁

양이원영 · 유정주 · 윤준병

허 영·홍성국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형이 확정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보상을 정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법 적용이 배제되는 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사람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거나 국가유공자 등으로 이미 등록된 사람이법 적용이 배제되는 범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등의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의 범죄경력을 주기적으로 확인 하도록 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와 보상이 적절히 이루어지도 록 하려는 것임(안 제79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2(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확인의무) ① 국가보 훈처장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78조제2항 및 제79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형을 받았는지를 연 1회 이상 확 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9조의2(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확인의무) ①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78조제2항
	및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
	호까지에 따른 형을 받았는지
	를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
	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관
	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조
	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범죄경
	력조회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
	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u>로 정한다.</u>